

「시설물안전법」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

- 중·소규모(제2종·제3종) 노후·취약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11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「시설물안전법」)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「시설물안전법」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,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, 긴급안전조치, 보수·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.

< 「시설물안전법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>

-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되어 있으나, 앞으로는 D·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 실시하도록 한다.
- 뿐만 아니라,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·D·E등급 제2·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*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.
 - * (제1·2·3종 시설물) 시설물의 유형별로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종별로 구분하여 관리
 - ** (안전점검·진단) 정기점검→정밀점검→정밀안전진단 순으로 고도화되며, 정기점검은 면밀한 육안점검, 정밀점검은 간단한 장비 사용, 정밀진단은 구조안전성 평가 실시
 - *** (안전등급)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 부여(5등급제, A(우수) - B(양호) - C(보통) - D(미흡) - E(불량))
- 한편, 현행 법령상 보수·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, 앞으로는 최대 3년*으로 단축되어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.
 - * 조치 의무 발생 후 1년 이내 착수, 2년 이내 완료(완료 기한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연장 가능)
- 이는 '23년 7월 국토교통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·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, 정밀안전진단, 보수·보강 등을 통해 노후·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.

□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(이하 ‘중앙사조위’)의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.

- 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. 이에 따라,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앙사조위를 구성·운영하여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.

□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“노후·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,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”이라며, “시설물 관리 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이성민	(044-201-4598)
		담당자	사무관	구단일	(044-201-3587)
			주무관	김영인	(044-201-4596)

참고 1

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

* ①③④ : 25.12.4일 시행, ② : '26.12.4일 시행

- ① 제2종·제3종 시설물 대상 정밀진단 실시 의무 부여 《법률 위임사항》
 - (개정법률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시설물 및 노후 제2종·제3종 시설물 관리주체에 정밀진단 실시 의무를 부여하여 안전관리 강화
 - * 현행법상 1종 시설만 정밀진단 실시 중(2종 시설은 정밀점검, 3종 시설은 정기점검 실시)
 - (영 개정(안)) 제2종 시설물 중 D·E등급 시설물 및 30년 이상 노후 제2·3종 시설물 중 C·D·E등급 시설물에 대해 정밀진단 실시 의무화
- ② 시설물 보수·보강 의무이행 기한 단축 《제도개선》
 - (현행) 중대결함 발생 등 보수·보강 의무 대상 시설에 최대 5년의 의무 이행 기한을 부여하여 조치기한 과다(2년 이내 착수, 착수 후 3년 이내 완료)
 - (영 개정(안)) 보수·보강 등 조치가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 기한을 최대 3년으로 단축*(1년 이내 착수, 착수 후 2년 이내 완료)
 - * 철거 후 재시공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완료기한 연장 가능
- ③ D·E등급 시설물 대상 긴급안전조치 등 의무 부여 《법률 위임사항》
 - (개정법률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 시, 시설물 관리주체에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·보강 의무 부여하여 안전관리 강화
 - (영 개정(안)) 안전등급 D·E등급으로 지정된 경우, 긴급안전조치(법 제23조, 사용금지·사용제한·철거·주민대피 등) 및 보수·보강(법 제24조) 등 의무화
 - * 현행은 D·E등급으로 지정되어도 의무이행 사항 없음
- ④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대상 범위 확대 《제도개선》
 - (현행) 시설물안전법상 국토부 중앙사고조사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('08.3) 이후 금번 오산 용벽 사조위('25.7~) 이전까지 사고조사 전무
 - * (현행 중앙사조위 운영기준) 시설물 붕괴 등 재시공 필요한 피해 / 사망자 3명 이상 혹은 사상자 10명 이상 / 국토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(시행령 제37조)
 - (영 개정(안)) 인명사고 발생 시 사망자 수와 관계없이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사망자 기준 강화(3명 → 1명)

참고 2

시설물안전법 관련 참고 자료

□ 제1·2·3종 시설물

- 제1종 시설물: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(법 제7조제1호)
- 제2종 시설물: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(법 제7조제2호)
- 제3종 시설물: 제1·2종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(법 제7조제3호)

		
1종시설물(남해대교) *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교량	2종시설물(남한강교) * 연장 100미터 이상의 철도교량	3종시설물(보도육교) * 보도육교

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개요

- 안전점검: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(법 제2조제5호)
- 정밀안전진단: 시설물의 물리·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안전성과 결함 원인 등을 조사·평가하여 보수·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(법 제2조제6호)

□ 시설물 안전등급 체계(시행령 별표 8)

안전등급	시설물의 상태
1. A (우수)	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
2. B (양호)	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,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
3. C (보통)	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, 주요부재에 내구성,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
4. D (미흡)	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·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
5. E (불량)	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